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8년 2월 28일

제08-09호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김양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kyanghee@kiep.go.kr, Tel: 3460-1157)

주요 내용

- ▣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대와 FTA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FTA 체결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대가 ASEAN임.

 -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이하 JAFTA) 추진이 일단락된 후 ASEAN 전체와 FTA(이하 AJCEP)를 체결하는 이중 방식을 채택하였음.
- ▣ 일본은 상품무역 분야에서 주요 JAFTA에 비해 AJCEP에서 낮은 수준의 양허에 합의함.

 -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되는 상대 개별국의 관심품목은 대부분 제외되는 등 소폭 개방에 그쳤음.
- ▣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JCEP와 JAFTA를 이중 추진한 전략의 효율성이 의문시됨.

 - 양자간 FTA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어도 AJCEP의 양허수준은 이보다 낮아, 한국가가 두 개의 양허 카테고리를 갖게 됨으로써 무역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대ASEAN6을 중심으로 AJCEP의 양허수준을 한·ASEAN FTA와 비교해 보면,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의 개방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함.
- ▣ 한·일 FTA 협상 재개 시 일본은 자국의 농수산물 양허방식과 폭을 대ASEAN FTA와 유사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ASEA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과 보다 긴밀하고 차별화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임.

1. 추진 경위

- 일본은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이하 JAFTA) 추진이 일단락된 후 ASEAN 전체(이하 AJCEP)와 FTA를 체결함.
- 일본은 2002년 11월 일·싱가포르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6년 7월과 2007년 11월에 각기 일·말레이시아 FTA 및 일·태국 FTA를 발효했고,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베트남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이와 별개로 일본은 2007년 11월 ASEAN 전체와 「日·ASEAN 포괄적 경제연대(包括的經濟連携)」(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을 타결하였음.
- 반면 ASEAN 이외 국가와는 일·멕시코 FTA와 일·칠레 FTA 두 건만 발효함.

표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8년 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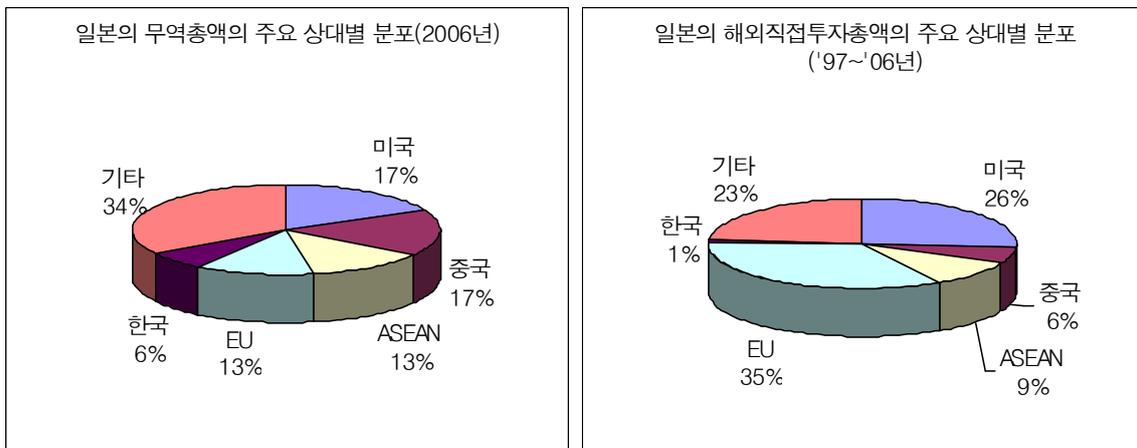
단계	대 상	교역 비중(%)	투자 비중(%)	비고
발효	싱가포르	2.2	1.8	2002. 11. 30 발효
	멕시코	1.0	0.1	2005. 4. 1 발효
	말레이시아	2.3	1.5	2006. 7. 13 발효
	칠레	0.7	0.1	2007. 9. 3 발효
	태국	3.3	2.8	2007. 11. 1 발효
체결	필리핀	1.4	1.0	2006. 9 체결
	브루나이	0.2	0.02	2007. 6. 18 체결
	인도네시아	2.6	2.1	2007. 8. 20 체결
타결	ASEAN			2007. 11. 19 타결
협상 중	베트남	0.8	0.1	2007. 10. 4차 협상 개최
	GCC	9.1	0.7	2007. 1. 2차 협상 개최
	인도	0.7	0.3	2008. 1. 5차 협상 개최
	호주	3.3	4.1	2007. 11. 3차 협상 개최
	스위스	0.6	0.5	2007. 11. 4차 협상
협상 중단	한국	6.3	1.3	2004. 11 6차 협상 이래 중단
		34.4	14.7	

주: 교역 비중은 2006년 수출입 총액 기준, 투자 비중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1997~2006년) 기준.

자료: 外務省(2008. 1), 「日本の經濟連携協定交渉 - 現状と課題 -」.

- 일본은 FTA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인 ASEAN을 중시함.
 -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역내의 안정과 번영, 일본의 경제력 강화 및 정치·외교상의 과제 해결, WTO 교섭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FTA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外務省 2007).
 - 일본의 이러한 FTA 체결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ASEAN으로서, 일본의 기 발효·체결된 8개 FTA 중 6개가 JAFTA이며, 협상이 타결·진행 중인 6개 중 2개가 ASEAN 및 JAFTA임.
 - 일본의 ASEAN 중시전략은 복합적인 측면을 감안한 실리주의의 귀결임.
 - 첫째,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 가능성과, 그 장애요인인 서구에 비해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존재(투자자보호 미약,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미약 등)라는 지역적 조건을 감안할 때 ASEAN과의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림 1. 일본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상대별 분포



자료: 外務省(2007. 10), 「日本の経済連携協定交渉 - 現状と課題 -」.

- 둘째, ASEAN은 일본의 무역액(2006년 기준)의 13%를 점하는 상대이며, 특히 자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1997~2006년 기준) 중 9%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음.
- 셋째,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외교안보적 요인으로서, 일본은 ASEAN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터라, 경쟁국인 중국이 이 지역과의 FTA 논의를 선점하자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기 때문임.

- 이하에서는 최근 일본이 ASEAN과 타결한 AJCEP 및 각 JAFTA를 상품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일본의 대ASEAN FTA의 주요 특징

가. 양허 개요

- AJCEP에서 각국은 경제수준 및 개방 정도에 따라 상이한 양허일정에 합의함.
- 일본은 대ASEAN 수입 총액 중 90%는 즉시, 2%는 5년 이내, 1%는 10년 이내에 각각 관세 철폐하며, 나머지 민감품목 7%는 관세인하 혹은 양허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ASEAN6(선발 6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대일수입 총액 및 총 품목수의 90%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민감품목은 관세인하 혹은 제외하기로 함.
- 후발국인 베트남은 대일수입 총 품목수의 90%를 1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10%를 관세인하 및 제외로 하였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CLM의 경우는 대일수입 총 품목수의 85%를 18년 이내에 매우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배려함.

표 2. 일본의 대ASEAN 상품분야 양허 현황

(단위: %)

국가	철폐					관세인하 및 제외	
	즉시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18년 내	관세인하	제외
일본	90	2	1	-	-	7	
ASEAN6	90			-	-	10	
베트남	90				-	10	
CLM	85					15	
말레이시아	99		-	-	1		
필리핀	98		-	-	1	1	
태국	97		-	-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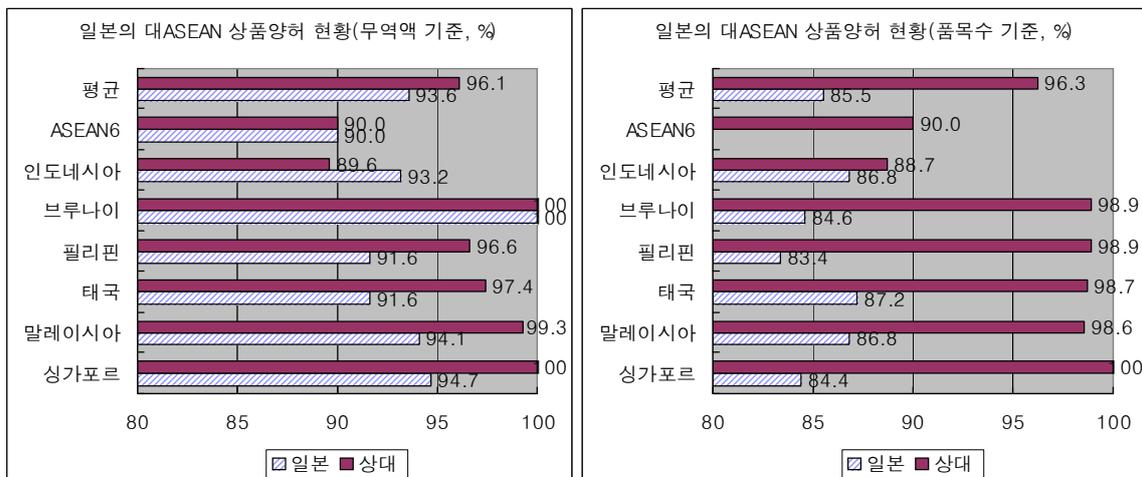
주: 1) 일본은 무역액 기준, ASEAN6은 무역액 및 품목수 기준, 베트남 및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버마))는 품목수 기준.

2)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수치는 양자간 FTA의 무역액 기준 내용이며, 양허제외 비중에는 재협정도 포함.

자료: 經濟産業省(2007. 12), 「日ASEAN包括的經濟連携(AJCEP)について」.

- 일본과 ASEAN 주요국은 AJCEP에서 JA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에 합의함.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각 AJFTA에서 각각 99%, 98%, 97%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여, '관세인하 및 제외'의 민감품목은 3% 이내에 불과함.
 - 이렇듯 동일한 회원국이라도 AJCEP와 JAFTA 간 양허수준이 다른 이유는 전자에서는 개별 국간 형평성을 고려해 후자에서 지정한 각국별 민감품목을 모두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일본과 ASEAN 주요국은 AJCEP와 AJFTA에서 민감품목을 상호 배려한 상품양허 추진을 위해 양허기준으로 품목수 기준이 아닌 무역액 기준을 채택함.
 - 일본시장의 양허수준은 무역액과 품목수 중 어느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 이는 일본의 소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의 경우 무역액 대비 비중이 적어, 관세인하나 양허제외로 하더라도 무역액 기준 개방수준은 낮지 않기 때문임.
 - 즉 일본정부가 공식통계에서 사용하는 무역액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은 AJCEP를 포함한 대 ASEAN FTA에서 평균 93.6% 양허한 것으로 나타나 ASEAN 회원국의 96.1%와 크게 다르지 않음.

그림 2. 일본의 대ASEAN 상품양허 현황(무역액 기준 vs 품목수 기준)



주: 품목수 기준 양허수준(우측 그림)에서 일본의 대ASEAN6 양허수준은 자료상 제약으로 파악 곤란하여 제외하였으므로, 일본 측 평균은 개별국과의 FTA의 양허수준만 평균한 수치임.

자료: 浦田秀次郎(2007), 「急増するFTAの貿易への影響」, 日本国際問題研究所 『国際問題』, No. 566 및 経産省(2007. 12)를 토대로 필자 작성.

- 그러나 품목수 기준으로 양허수준을 판단할 경우 AJCEP의 양허수준은 파악이 곤란하며, JAFTA에서 일본의 양허수준은 평균 85.5%(대ASEAN6 제외)로 드러나 ASEAN 측의 96.3%에 비해 10.8%포인트 낮은 수준임.
- o 양국간 교역 중 농수산물 비중이 16%에 달하는 일·태국 FTA의 경우 일본과 태국의 양허수준은 무역액 기준으로 각각 91.6%, 97.4%로 양호해 보이나, 품목수 기준으로는 각각 87.2%, 98.7%로 되어 양국 양허수준간에 11.5%포인트 차이가 발생함.
- o 양국교역 중 농수산물 비중이 약 10%를 접하는 일·필리핀 FTA의 경우에도 양국간 양허수준 격차가 무역액 기준 시 5.3%포인트이나 품목수 기준 시는 15.5%포인트로 벌어짐.

나. 일본의 대ASEAN FTA의 농수산물 양허 현황

- 일본은 양자간 FTA에서 제외한 대부분의 민감품목을 AJCEP에서도 양허제외함.
- 쌀과 보리 및 그 조제품, 지정유제품, 전분은 AJCEP에서 '제외 및 논의제외 대상'으로 처리된바, 이 품목들은 양자간 FTA에서도 공통적으로 동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가장 민감한 품목임을 알 수 있음.
- o AJCEP에서는 이밖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및 그 조제품, 파인애플(통조림 포함), 합판(열대산 목재 중 관세 10% 품목, 열대산 목재 외 품목), 가다랑어(가쓰오)·참치, 수산수입쿼터(IQ)품목 등도 '제외 및 논의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품목들 또한 양자간 FTA에서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다루어졌음.

표 3. 일·ASEAN FTA(AJCEP)의 일본 측 농수산물 양허 현황

양허 카테고리	주요 품목
즉시철폐	두리안, 새우, 새우조제품 등
10년 내 철폐	염장(鹽藏)가지, 카레조제품, 해파리 등
관세인하	닭고기조제품, 합판(열대산 목재 중 관세 6~8.5% 품목) 등
제외 및 논의 제외 대상	쌀과 보리 및 그 조제품, 지정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및 그 조제품, 전분, 파인애플(통조림 포함), 합판(열대산 목재 중 관세 10% 품목, 열대산 목재 외 품목), 가다랑어·참치, 수산수입쿼터(IQ)품목 등

자료: 農林水産省(2007. 12), 「經濟連携協定(EPA)·自由貿易協定(FTA)をめぐる状況」.

- 한편 일본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모두 관심을 보인 새우(관세율 1%) 및 새우조제품(동 3.2~5.3%) 등에 대해 AJFTA 및 AJCEP에서 즉시철폐를 단행함.
- AJCEP에서는 염장(鹽藏)가지, 카레조제품, 해파리 등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 카레조제품은 일·싱가포르 FTA(5~10년 내 철폐), 해파리는 일·태국 FTA(5년 내)에서도 각각 유사한 양허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품목임.

- AJCEP에서 닭고기조제품, 합판(열대산 목재 중 관세율 6~8.5% 품목) 등의 경우는 적정 수준까지 관세인하를 하는 정도에서 합의를 도출함.
- 이처럼 AJCEP에서는 양자간 FTA의 제외품목을 모두 종합했기 때문에 JAFTA에 비해 많은 제외품목을 포함하게 되었음.
- 일본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상대 개별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일본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 민감품목은 대부분 제외되어 자국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급격한 개방의 충격을 피하고자 하였음.
- 즉, 닭고기(태국, 필리핀), 바나나(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인애플(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으로 처리함.

표 4. 일본의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중 주요 농산물 양허 현황

구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농수산물 교역비중 ¹⁾	미미	미미	17%	9.9%	5.2%	
철 폐	즉시	아스파라거스, 망고, 두리안, 제재, 새우	새우, 팜유, 합판 외 입산물, ²⁾ 망고	새우, 새우조제품, 아스파라거스,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야채·과실조제품 일부, 오리육	아스파라거스, 망고, 두리안, 칠면조고기, 오리육, 새우	새우, 새우조제품, 망고, 파파야
	5년내	코코아, 야채류스, 포도, 자두과즙, 카레조제품	마늘, 오징어훈제품	가다랑어· 참치조제품, 파, 오이 (일시보존), 해파리 복숭아, 사과, 자몽, 마요네즈, 드레싱, 소스, 섬유판, 복	가다랑어·참치, 마늘, 복숭아, 성계	코코아, 커피, 차제품 (설탕, 우유 미포함) 일부 ³⁾
	10년내		건조버섯, 자몽	복숭아, 사과, 자몽, 마요네즈, 드레싱, 소스, 섬유판, 복	포마바나나, 자몽, 원두커피, 굴, 톳	
	15년내	오렌지, 포도과즙	황란, 오렌지, 녹차	오렌지, 오렌지과즙	오렌지	
관세인하		마가린	닭고기, 토마토소스, 米油·대두유 일부	토마토소스		
저율할당 관세 (TRQ) 및 무세할당		바나나	바나나, 파인애플, 당밀, 전분유도체, 돈육조제품 일부	당밀, 마스코바도당, 닭고기, 파인애플, 돈육조제품 일부, 소세지, 아이스크림	바나나, 파인애플, 솔비톨	
재협의		합판	돈육, 설탕, 카사바전분, 합판	조정, 바나나통조림, 쇠고기, 돈육, 정제당, 카사바전분, 합판	합판, 가다랑어· 참치	
제외 및 논의 제외	쌀과 보리 및 그 조제품, 지정유제품, 전분(태국, 필리핀은 사고전분만 해당)					
	쇠고기, 돈육, 닭고기, 설탕, 파인애플 (통조림 포함), 합판, 가다랑어·참 치, 수산Q품목	쇠고기, 돈육, 파인애플 (통조림 포함), 설탕	쇠고기, 수산Q품목	수산Q품목	수산Q품목	쇠고기, 돈육, 설탕, 수산Q품목

주: 1)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는 전 교역품목 대상, 이들을 제외하고는 관세부과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총 교역 중 농림수산물 비중(2006년 기준).

2) 굵은 글씨는 FTA 대상국의 관심품목.

3) 3~7년간 철폐.

자료: 經濟産業省(2007. 12), 「日ASEAN包括的經濟連携(AJCEP)について」; 經濟産業省(2007. 9. 3), 「經濟連携の取組について」; 農林水産省(2007. 12), 「經濟連携協定(EPA)·自由貿易協定(FTA)をめぐる状況」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3. 평가와 시사점

- 결과적으로 회원국과의 JAFTA와 AJCEP를 구분하여 추진해온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방식의 효율성이 의문시됨.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JAFTA를 개별적으로 추진한 뒤 AJCEP를 추진하는 이중 방식으로 ASEAN과 FTA를 체결해온바, 이러한 이중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ASEAN의 선발·후발국 간 경제격차로 개별 협상이 효과적이거나, ASEAN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ASEAN 전체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제시함(經濟産業省 2006, 『通商白書 2006』).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위와 같은 이유뿐 아니라, 중국에 비해 뒤처진 FTA 추진실적을 만회하고, 개별국에 대한 일본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김양희 2006).
 - 상품양허 측면에서, ASEAN6와의 JAFTA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라도 AJCEP에서 이보다 낮은 양허수준으로 합의한 이상, 동일국가가 두 개의 상이한 양허 카테고리를 갖게 돼 무역효과가 왜곡될 개연성이 존재함.
 - 가령, 일본이 태국 및 필리핀과의 FTA에서 가다랑어(0302.33)의 현행 3.5% 관세율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AJCEP에서는 이 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5년 후 태국과 필리핀은 자국산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경우 대일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는 반면 ASEAN 여타국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됨.
 - 만일 이 두 나라를 제외한 여타국이 이 나라들을 통해 동일 품목을 대일 우회 수출할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일본시장의 양허제외 효과는 5년 후 무의미해짐.
 - 또한 일본이 JAFTA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J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품목의 ASEAN 내 이동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경쟁력면에서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한 역외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AJCEP의 체결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음.
- 대ASEAN6를 중심으로 AJCEP의 양허수준을 한·ASEAN FTA와 비교해 보면,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의 개방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함.
 - 한·ASEAN FTA에서는 양허 카테고리를 일반품목군(Normal Track, 총 품목의 90%)와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총 품목의 10%)로 대분류한 뒤, 후자는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세분함.

- 한편 양허기준으로는 무역액과 품목수를 동시 적용하기로 하여 총 무역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적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수산물품목의 대거 제외를 방지하되, 각 품목군에 포함될 품목 지정은 당사국의 자발적 분류를 원칙으로 하였음.

표 5. 한국의 대ASEAN 상품분야 양허 현황

구분	일반품목군(90%)							민감품목군(10%)	
	즉시	2007	2008	2009	2010	2012	2012	일반	초민감
한국	70%이상 철폐	-	95% 철폐	-	철폐 완료	-	-	2016	
ASEAN 6	-	최소 50%를 관세율 0~5%로 인하	-	최소 90% 철폐	5% 철폐	-	철폐 완료	7%를 관세율 0~5%로 이하	3%를 '제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

주: 한국과 ASEAN6란의 각 수치는 일반품목군(90%)과 민감품목군(10%)을 각기 100%로 간주했을 때의 비중.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 이러한 기준에 의거, 한국은 일반품목군의 70%에 대해 즉시철폐를 단행하고 발효 4년 이내(2010년)에 이 품목군의 관세철폐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민감품목군 중 초민감품목은 3%로 제한함.
- ASEAN6는 일반품목군 90%에 대해 발효 3년 이내(2009년)에 최소 90%를 철폐하고, 6년 이내(2012)에 철폐완료에 이르는 데 합의함.
- 민감품목의 개방여부를 판별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품목수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대ASEAN FTA 상품양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양자간 FTA의 양허 현황(그림 2 참조)은 83.4~87.2%로, 한·ASEAN6의 경우 2016년까지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하는 일반민감품목은 차치하더라도, 일반품목군의 양허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일본정부는 무역액 기준으로 파악한 자국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FTA의 양허수준이 각각 99%, 98%, 97%로서, 한·ASEAN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經濟産業省 2007)하나, 상호 양허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평면적인 비교가 곤란하며, 따라서 일본 측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¹⁾

1) FTA는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MFN) 원칙에 위배됨. 단지 상품무역의 경우 GATT 24조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관세 및 통상규제를 철폐하는 경우 WTO 규정과 정합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MFN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기준이 모호한 실정임. 일반적으로 상품양허 비중이 90%를 넘고 특정 민감품목이 일괄 제외되지 않으면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되나, 그 90%의 기준이 품목수인지 무역액인지도 불명확함.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자국의 시장개방 시 무역액 기준을 쓰더라도 이를 규정위배라고 하기 어려움. 단, 일본이 자국의 농수산물 시장 보호에 치중한 결과 개방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꺼려 한다는 주변국의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임.

- 한·일 FTA 협상 재개 시 일본은 자국의 농수산물 시장 양허방식과 폭을 대ASEAN FTA와 유사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한·일 FTA에서도 일본은 대ASEAN FTA 시 보여준 바와 같이 품목수 기준이 아닌 무역액 기준을 양허기준으로 채택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한국은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뿐 아니라 비교열위에 있는 공산품의 양허결과가 국내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는 동시에, 향후 중국과의 FTA 또한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 한국과 일본이 각각 ASEAN 및 베트남·CLM과의 FTA에서 채택한 대로 품목수와 무역액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AJCEP에서 일본이 '제외 및 논의제외 대상'으로 처리한 농수산물은 한·일 FTA에서도 민감 품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음.
- 이 중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인 참치 및 수산수입쿼터(IQ) 품목 등은 한·일 FTA에서도 일본이 동일한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음.
-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ASEA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과 보다 긴밀하고 차별화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임.
- ASEAN은 AJCEP의 타결로 동북아 삼국 모두와 FTA를 맺게 되어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였고 현재 인도, 뉴질랜드, 호주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장차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 일익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 역내 강대국을 제치고 중강국의 위치에 있는 ASEAN이 FTA의 허브가 된 것은 중·일 간 패권 다툼의 산물이기도 하나 그만큼 ASEAN의 외교력과 대외협상력이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ASEAN과 유사한 역내 중강국의 지위에서 역내 강대국이자 ASEAN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구사함으로써 ASEAN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령, 한국정부는 한·ASEAN FTA 중 협상이 남아있는 투자분야(상품분야는 2007년 6월 발효, 서비스는 2007년 11월 체결)에서도 ASEAN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임.